

민간군사기업의 법제화 필요성과 그 모델에 관한 연구*

곽 선 조*

요 약

20세기를 지나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전 세계는 이데올로기적 냉전에 기초한, 미국과 소련이라는 양대 강국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세계 질서는 깨지고, 개개 국가나 정치집단은 각자 자유로운 삶의 틀 속에서 생존을 위해 경쟁하였다. 바로 그 와중에 새롭게 나타난 기업 형태 내지 전쟁의 형태변화중 하나가 민간군사기업이다. 민간군사기업은 군사공급기업, 군사자문기업 및 군사지원기업으로 구분된다. 민간군사기업은 주로 군사지원기업에서 출발하는 민영화의 한 형태라고 이해하는 시각에서 용병(mercenary)과는 구별된다. 다른 경우와는 달리 군사공급기업은 총포로 무장하여 전투를 직접 수행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도입에는 반드시 법적 근거를 특별히 제시하여야 하는데, 특히 민간인이 원칙적으로 무기를 소지할 수 없는 한국에서는 무기를 소지하고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민간군사기업인 군사공급기업(MPF)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를 허용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그 경우 일본의 해적행위처벌 및 해적행위 대처에 관한 법률은 특별법 제정의 한 모델이 될 수 있다.

A Study on Utilization and its Model of the Private Military Companies(PMCs) in Introducing the Legal System in Korea

SunJo Kwak*

ABSTRACT

The private military company(PMC) or the private military industry may be one of the most important, but little understood developments in security studies to have taken place over the last decade. This new industry, where firms not only supply the goods of warfare, but rather fulfill many of the professional service functions, is not only significant to the defence community, but has wider ramifications for global politics and warfare. The private military industry emerged in the early 1990s. Its underlying cause was the confluence of three momentous dynamics - the end of the Cold War and the vacuum this produced in the market of security, transformations in the nature of warfare, and the normative rise of privatization. In order to introduce MPFs(Military Provider Firms) into Korea, where in principle private citizens are prohibited to own a gun, unlike the United States, a special law should be enacted which allows them to possess weapons and fight in combat. Therefore,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has been submitting and discussing 「the Act on the Prevention and Conduction of Practice of Piracy」 since 2014.

Key Words: Private Military Company(PMC), Private Military Firms(PMFs), Military Provider Firms(MPFs), Military Consulting Firms(MCFs), Military Support Firms(MSFs), Piracy, Mercenary

접수일(2018년 8월 31일), 수정일(1차: 2018년 9월 23일),
게재확정일(2018년 9월 30일)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부

★ 이 논문은 2015년 12월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인 “민간군사기업의 실태분석을 통한 국내 도입 타당성과 법제화 모색”을 요약한 것임.

1. 서론

세계 각국은 냉전이 종식되면서 국가의 정규군에 대한 인력감축을 단행하고 있다. 그렇지만 냉전 종식 이후에도 각 나라는 자원 확보와 테러 지원국 척결 등의 이유로 국지적인 분쟁에 휘말리고 있으며, 각 국가마다 그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와 관련하여 미국, 영국 등 군사 선진국에서는 각 국군의 인력을 대체하는 방안으로 민간군사기업을 활용함으로써 분쟁발생지역에서의 병참, 번역, 전투 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무들을 아웃소싱 하는 형태로 운영하여 임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다.

민간군사기업(PMC, Private Military Company)을 대하는 세계 각국의 대처 방법은 크게는 대동소이하다. 국가의 전쟁을 지원하거나 건설링하는 민간군사기업은 이미 도입되어 있고, 또 그런 업무를 민간기업에 아웃소싱 한다고 하여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지만, 전쟁 자체를 직접 대행하는 군사공급기업(MPF, Military Provider Firm)을 도입하느냐는 국가와 전쟁에 대한 전통적 관념에서 많은 저항을 받는다. 그러므로 민간인의 무기 소지를 허용하는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군사공급기업(MPF)을 도입하는데 스스로 한계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지구촌 사회에서 점증하는, 육해공을 넘나드는 무차별한 테러는 우리로 하여금 군사공급기업의 도입 타당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한다. 국민의 안전을 국가가 보장하지 못한다면 결국 국민 스스로가 자기 보호와 방어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군사공급기업을 포함한 민간군사기업의 도입이 필요하다면, 그 도입의 방법이나 모습은 어떠한가 하는가가 문제이다. 그런데 그 타당성이나 문제점을 분석하고 파악함에 있어서 아직 민간군사기업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지 못하는 우리로서는 외국의 실태를 분석하여 반면 교사로 삼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연구는 민간군사기업을 국내에 도입함에 있어서의 그 당위성과 타당성을 외국의 사례를 통하여 분석하

여 제시하고, 법제화시 문제점과 향후 방향을 규명함으로써 국내 민간경비 차원에 머물고 있는 민간군사기업을 글로벌한 차원으로 국내 도입함에 필요한 정책적·구조적 체계의 재정립의 필요성을 제시하는데 그 필요성 및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와 관련하여, 정부는 2014년 해적행위를 예방하고 그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해적행위 예방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현재 국회가 이를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내용과 방향이 바람직한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당해 법률안은 향후 우리나라가 민간군사기업을 국내 도입하고 법제화함에 있어서 시금석이 될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2. 관련연구

2.1 민간군사기업의 정의

민간군사기업이란 전쟁과 밀접한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사업체로서, 군사 업무에 대한 지원이나 건설링 혹은 전쟁 수행 자체를 대행하는 업체 또는 기업을 말한다[1]. 민간군사기업은 때론 PMFs(Private Military Firms) 또는 PMI(Private Military Industry)를 번역한 말로 쓰이기도 하나, 그 의미는 대동소이하다.

민간군사기업은 고대에 부족의 병력 보충 및 자국민의 보호를 위해서 사용해 오던 직업적인 용병(mercenary)제도가 1990년대 이후부터 현대적인 기업형태를 갖추고 합법적으로 사업을 시작해 오다가, 현재는 기업의 형태로 발전되어 온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2].

민간군사기업의 개념이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과연 민간군사기업이 전통적 의미의 용병과 구별되는가이다. 통상 전통적 의미의 용병은 UN의 인권규약을 어기고 불법적으로 무장한 사람들로서 통상 국제법적 정의나 국가적 이념과는 상관없이 오직 돈벌이만을 위해 움직이는 무장 조직을 말한다. 민간군사기업과 용병을 구별할 것인가 아니면 같은 것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두 개의 견해가 서로 입장을 달리한다[3].

2.1.1 기업화된 용병으로 보는 견해

민간군사기업은 비록 기업의 형태를 띠고 합법을 가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기업화된 용병의 하나라고 보는 이 견해는 용병이냐 아니냐는 그 도덕성 내지 윤리성에 근거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민간군사기업은 공익을 추구하는 조직이 아니라, 단지 사적 이윤 추구만을 직접적 목적으로 하므로 그 본질상 용병에 불과하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특히 최근 불거지고 있는 민간군사기업의 반인륜적 행태에 의하여 더욱 힘을 얻어가고 있다[4]. 통상 용병과 민간군사기업 내지 민간보안업체는 “용병은 돈을 받고 고용되어 ‘싸우는’ 병사이고, 민간군사청부인(private military contractor) 또는 민간보안청부인(private security contractor)은 돈을 받고 안전을 ‘지키는’ 경호원”이라고 구분되어 왔다. 그러나 보안업체가 현대적 병기로 무장하여, Black water와 같은 ‘공격적’ 방어 전략을 쓰는 업체의 출현에 이르면 그러한 구별은 사실상 무의미해 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견해는 주로 1990년대 이후 발전한 현대적 의미의 용병 기업은 그 출발점이 전쟁 수행이 아니라, 군수품의 생산 및 조달로서 순수 기업 활동의 일환이었다는 점과 군사업무의 민영화는 오히려 그 윤리성과 효율성을 강화하자는데 그 의도가 있었다는 비판에 비해 제대로 방어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2.1.2 새롭게 등장한 민간안보업체로 보는 견해

민간군사기업을 용병과는 구별하는 입장이다. 민간군사기업을 용병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보아, 글로벌 사회에서 국가의 기능을 대신하는 그 효율성과 타당성을 갖춘 기업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민간군사기업을 용병이 아닌 일종의 민영화기업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민간군사기업에 대한 부정적 입장에서 민간군사기업을 보는 시각은 민간군사기업의 역기능만을 강조한 것이지 그 본질을 도외시한

것으로 이른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일반적으로 민간군사기업은 용병과 다음과 같이 구별되는 특징을 갖는다.

첫째, 민간군사기업은 법인체로 되어 있는데, 민간군사기업은 보통 이사회나 주주 총회 같은 명확한 관리 하에 위계 조직을 갖춘 기업 조직에 따라 구성되며, 따라서 세계 시장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이미 검증된 효율적이고 영구적인 구조를 갖는다.

둘째, 민간군사기업은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사업상 이윤 추구를 그 동기로 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돈벌이나 모험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적인 모험사업인 용병과는 구별된다.

셋째, 민간군사기업은 세계적인 경쟁 시장에서 경쟁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민간군사기업은 국가에 의하여 사업 승인을 받음을 전제로 활동하기 때문에 적어도 그 점에서는 국가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바로 그 점에서 주로 기존 암시장에서의 용병과는 다르다. 용병과 민간군사기업의 구별은 궁극적으로는 그 윤리성 내지 규범성에서 찾아야 하며, 따라서 오늘날 민간군사기업이 전통적 의미의 용병과 다른 점은 그것이 개인기업의 모습을 갖든 법인의 모습을 갖든 그 조직이나 활동이 국가의 승인 하에 이루어지고 있어서 국가의 통제를 받아 그 윤리성을 확보했기 때문이라는 데 있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국가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 국제법적 통제를 받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5].

그런 의미에서 민간군사기업은 오늘날 용병이 기업화한 것이라기보다는 용병적 기능도 갖는 민간기업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민간군사기업의 출현은 용병의 기업화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국가 조달기능이 그 효율성을 찾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출현하는 현대적 기업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민간군사기업을 용병과는 구별되는 국가산업 대체 기업으로 보면서 그 역기능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생각한다. 역기능이 있다 하여 그걸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 하는 일반화의 오류는 범하지

말아야 함은 물론이다.

2.2 민간군사기업의 종류

민간군사기업이 갖는 군사원리적 측면과 경제원리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민간군사기업의 분류를 시도한 대표적인 경우로 싱어(Peter W. Singer)를 들 수 있다. 싱어는 이른바 “창끝”유형학(typology of “Tip of the Spear”) 이론을 제시하며 그에 근거하여 민간군사기업을 군사공급기업·군사자문기업·군사지원기업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창 의 손잡이에서 창끝으로 가면서 그 유형이 「군사지원기업→군사컨설턴트기업→군사공급기업」으로 민간군사기업의 모습이 바뀌어 바뀌어간다는 것이다[6].

2.2.1 군사공급기업

군사공급기업(Military Provider Firms)은 전선의 최전방에서 직접 전투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군사기업을 말한다. 군사공급기업과 거래하는 전형적인 고객들은 대개 긴박한 상황에 직면한, 비교적 군사역량이 부족한 곳들이다. 이 경우 군사공급기업은 고객에게 대개 종합적인 부대 패키지(overall unit package)나 전문화된 무력증합서비스(force multipliers)를 제공하는 식으로 두 가지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앙골라·시에라리온·파푸아뉴기니·인도네시아 등지에서 활동을 벌인 Executive Outcomes, Sandline International, SCI, NFD 등이 그 대표적 예이다[6]. 이들 군사공급기업은 때론 향후 유엔의 평화유지군의 역할을 대체할 가장 효율적이고 실효적인 수단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2.2.2 군사자문기업

군사자문기업(Military Consulting Firms)은 민간군사기업의 두 번째 유형으로서, 고객의 군대의 군사 작전과 개조에 없어서는 안 될 자문 및 훈련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군사자문기업은 주로 퇴역 군인이나 현직에 있지 않는 군사전문가들이 담당하는데, 이들의 존재가 현지 군사력

을 개조함으로써 전략적·전술적 환경을 새롭게 만들 수 있음에도, 전장에서 최종적 위험을 무릅쓰는 것은 고객 자신이라는 점에서, 고객을 위해 군사작전을 직접 대행하는 군사공급기업과는 구별된다. 이 부문에 속하는 기업들로는 레브단·비넬·MPRI 등이 있다[6].

2.2.3 군사지원기업

민간군사기업(Military Support Firms)의 세 번째 유형은 군사지원기업인데, 군사지원기업은 군사공급기업과 군사컨설턴트기업의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의 부수적인 군사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즉, 병참, 정보, 기술 지원, 보급, 수송 등을 비롯하여 비살상(nonlethal) 지원 및 조력 등을 모두 포함한다. 대표적인 군사지원기업으로는 브라운 앤드 루트(Brown & ROO T), 보잉서비스(Boeing Services), 홈즈(Holmes)나 나버(Narver) 등이 있다[6].

2.3 민간군사기업의 특성

민간군사기업의 특징은 전통적으로 국가의 군대가 담당했던 전투활동, 전략계획, 군사훈련, 첩보, 병참, 정보전 등의 임무를 용역으로 제공한다는 것이다. 또, 민간군사기업은 제조업과 같은 전통 산업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공공군사 구조와 비교해 볼 때 자본 집약적인 산업 부분도 아니다. 민간군사기업은 하나의 산업이고, 군대업무를 대신 맡아 운영하는 기업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7].

첫째, 민간군사기업은 군사 분야에 대한 재화와 용역을 전문적으로 제공한다. 이들 기업이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는 단순한 군수지원에서부터 군사교육·훈련제공, 전략·전술적 자문 및 지원, 요인경호, 시설경비, 전후처리, 지뢰제거, 비밀작전 그리고 전투행위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둘째, 민간군사기업은 이윤을 목적으로 계속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계층제와 분업이라는 기업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므로 개인차

원의 용병과 일회성 지원으로 금전적 대가를 취득하는 일시적 계약 행위자들과는 구분된다.

셋째, 민간군사기업은 기업으로서 복잡한 재무적 활동을 하고 있다. 즉 그들은 회사를 주식시장에 상장하기도 하고 법인으로서 입찰 참여 등 다양한 계약행위를 하며 대기업의 자회사로서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다.

넷째, 민간군사기업들은 다국적 기업인 경우도 있으며 활동 무대는 국제적인 경우가 많다. 최근 민간군사기업들은 기업합병(M&A) 등으로 다국적 대기업화 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시장의 다양한 요구에 신속하고 폭넓게 대응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향상시킨다. 국제분쟁이 있고 군사적인 주문이 있는 곳이라면 이들 기업은 다양한 고객들을 위해 지역과 국가의 구분을 따지지 않고 계약을 수주하여 영리 추구에 매진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민간군사기업은 전쟁과 관련한 분야로 시작된 개념이었으나 지금은 군 아웃소싱과 관련하여 훈련, 군수분야 등 넓은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2.4 현대적 민간군사기업의 출현 배경

오늘날과 같이 민간군사기업이 일반화되고 양적·질적으로 팽창하게 된 원인이나 배경은 무엇인가에 대해 학자들은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으나, 대개는 「20세기 냉전 종식에 따른 보안 시장의 공백 발생 (the end of cold war and the vacuum this produced in the market of security), 전쟁 성격의 변화 (transformation in the nature of warfare), 그리고 군사 업무의 민영화 (the normative rise of privatization)」 등을 들고 있는 것이 공통적이다(Singer, 2004: 2). 그러나 1990년대부터 발전하기 시작한 오늘날의 민간군사기업을 출현하게 한 가장 근본적인 배경은 무엇보다 “냉전 종식으로 대표되는 국제정치 환경의 변화”라 할 것이다[8].

3. 민간군사기업의 국내 도입의 필요성

3.1 위험지역에서 활동하는 국민의 보호

한국은 이미 글로벌 세계 경제의 주역으로서 세계 각지에서 경제·문화·종교 및 정치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 범위는 날로 커질 것임은 자명하다. 또 그 활동 영역은 점차 아프리카 등 안전 취약 지역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국내 국민과 더불어 해외에서 활동하는 국민 역시 보호해야 함은 물론이다. 문제는 그런 경우 해외 국민의 안전을 군대에게만 맡기자는 것은 너무 고식적이고 낙후된 생각일 수 있다. 특히 국군의 해외파병은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국군이 해외 파병되어 해외 위험 지역에서 활동하는 재외 국민을 적절히 보호하기는 어렵다. 군대가 파견되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절차와 비용이 들어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적 모순에 빠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틈새를 보완해 줄 민간군사기업의 도입은 무엇보다 시급하다 하겠다. 위험이 있는 곳에 반드시 안보의 수요는 있게 마련이고, 그럼에도 국내에서 달리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 수요는 결국 외국의 업체에게 맡겨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더욱 비효율적이고 비윤리적일 수 있다는 것도 더불어 검토할 문제인 것이다. 반드시 하여야 할 일을 국가가 하지 못한다면 국민에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는 국민의 자기 보호 내지 정당방위의 측면에서도 주저할 일은 아닌 것이다. 민간군사기업을 국내 도입해야 할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3.2 제대군인의 재사회화 증대

헌법상 국가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헌법 제32조 제1항), 특히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제6항). 그런 취지에서 최근 국방부 차원에서 취업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전역 군인의 향상과 재취업보장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시행중에 있으나 이는 군 내부적인 소요에 국한되어 있어 다양한 계급에 수혜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군사 전문지식을 활용하고 다양한

계층에서 제대한 군 출신만이 참여할 수 있는 자생적인 민간군사기업을 육성하여 특화된 직종을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는 민간군사기업의 도입이 필요하다[9]. 민간군사기업의 형태 중 군사력 제공 분야는 한반도 안보 여건상 현실적으로 제한되므로 군사자문 및 군사지원 분야에서 군사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 및 능력을 갖춘 제대군인의 재취업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군 관련 업무와 일반 기업체의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특화된 새로운 민간군사기업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 및 국방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법적·제도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10]. 그러나 그러한 필요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일자리 창출 의무에서 군사공급기업(MPF)의 도입 의무까지는 도출되지 않는다. 전통적으로 직접적으로 전쟁을 담당하는 것은 국가의 고유 업무였을 뿐만 아니라, 용병은 불법적인 것으로 허용되지 않은 직업이었기 때문이다.

3.3 글로벌 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의 강화

전 세계적으로 수 년 동안 가장 복잡하고 위험한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일을 처리하며, 잘 교육되고, 능력이 있는 안전 전문가들을 가지고 있는 민간군사기업의 필요성이 중요시 되고 있다. 국내 민간군사기업의 제도적 도입과 보호는 두 가지 측면에서 국가의 국제 경쟁력을 높인다. 우선, 글로벌 국제사회에서 특히 무역을 통해 국부를 구축해온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들은 내수보다는 해외 진출을 통한 이윤 추구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으며, 그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진출과 해외 시장의 개척과 확장은 불가피하다. 그에 따라 해외 위험지역에 있는 국민과 기업의 보호 필요성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 때 그 보호를 외국의 민간군사기업에게 맡긴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의 국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내 민간군사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국가경쟁력의 제고라는 측면에서도 찾아지는 것이다.

4. 민간군사기업의 도입 방향과 법제화 모색

4.1 민간군사기업의 공통적 문제점과 그 대책

4.1.1 공통점 문제점

2004년 이라크 전쟁을 중심으로 하여 세계 각지에의 민간군사기업의 경험들은 오늘날 민간군사기업의 공통적 문제점들로 다음과 같이 크게 정치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의 두 문제점을 야기한다.

우선 첫 번째 민간군사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민간군사기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민간군사기업 자체는 그 연혁을 따지면 고대 용병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지만, 현대에서도 민간군사기업의 출현은 국가가 자연적으로 발생한 군사기업을 국가 목적으로 이용하는데 기인한 것이지, 국가가 국제사회가 의도하여 법적, 제도적으로 만들어내어 체계화시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민간군사기업은 국제질서나 국가질서가 아직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곳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난다. 즉, 생태적으로 불법을 먹고 살려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민간군사기업은 국제법과 국내법의 사각지대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며, 이는 곧 법적 규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음을 의미한다. 민간군사기업의 윤리성이 언제나 도마 위에 놓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 결과 민간군사기업의 비윤리성은 정치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모순에 직면하게 된다.

첫째, 민간군사기업의 이윤추구와 공공이익 사이의 충돌이 생긴다. 민간군사기업이 추구하는 전쟁 업무 영역은 전통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 영역이었으나, 이를 사적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민간’군사‘기업’이 담당하고 있다는 모순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다.

둘째, 민간군사기업이 어떤 사람들을 채용하는가를 국가기관이 규제하기가 어렵다는 점과 군

사적 행동의 책임성이 저하된다. 이는 곧 민간군사기업들의 소속 민간요원들의 윤리성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셋째, 민간군사기업의 사업이 사실상 한 국가의 정책적 행위인데도 국민들이 잘 모르고 지나간다는 점과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간군사기업을 활용하는 문제이다.

넷째, 민간군사기업은 군사조직과 같은 엄격한 규율이나 감시, 강제와 같은 개념이 부족하다. 민간군사기업은 분명 군사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은 곧 통제되지 않는 군대가 갖는 모순을 잉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민간군사기업과 군 사이의 오묘한 관계이다. 군의 아웃소싱은 분명히 군에도 이득이나, 국가가 이를 제대로 조정하지 못하면 오히려 큰 손해를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문제점은 민간군사기업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은 민간군사기업 역시 자본주의원리에 따른 병리 현상의 모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지난 시대의 용병들과는 달리 오늘날의 민간군사기업은 그 출발점이 자유시장경제에 기초한 신자유주의의 산물로서 비록 그 업무는 전쟁 업무이기는 하지만, 그 본질은 어디까지나 민간기업(private company)의 하나이다. 따라서 그 군사적 모습을 갖는 외관과는 달리 그 내재적 생리는 기업의 생리를 따라가기 마련이다. 그건 이유로 민간군사기업 역시 자본주의원리에 따르는 병리 현상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민간군사기업은 궁극적으로 민간기업으로서 사적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윤을 내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 스스로 회계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없음은 물론, 그 소속 직원들의 인권 보장을 담보할 수 없다는 모순을 처음부터 잉태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때로는 업무의 전문성 역시 포기하거나 후퇴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은 이미 관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4.1.2 공통적 대책

민간군사기업이 오늘날 가장 폭발적인 산업의 하나로 급성장하고 있는 것은 멀리는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 자유주의에 물든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까이는 현대사에서 군산복합체(the military-industry complex)를 출현하게 한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역할이 적지 않다. 또 최근의 신자유주의 사조도 여기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문제는 그러한 민간군사기업이 공공정책의 집행자이기도하며 민간군사기업의 고객이기도 한 정부의 통제나 감시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것이다. 원래 민간군사기업은 미국 정부의 구상에서 나온 것으로 "보다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일을"한다는 마인드에 기초한다. 그러니 현실은 민간군사기업이 오히려 고비용적일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더욱 부정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민간군사기업의 역기능이 점점 현격해지고 있는 것이다(이장욱, 2011: 174-188). 그렇다면 그에 대해 우리는 어떤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가? 다음과 같은 대책이 먼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6].

4.1.2.1 법적 규제를 통한 정치적 윤리성과 법적 책임의 강화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민간군사기업에의 업무 위탁 내지 민영화는 매우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그 원인이 당해 업무에 대해 실제로 투입되는 인원이나 장비들에 대해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거나 업무의 진행 방법에 따라 사후에 예측을 빚나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민영화라 하여 언제나 비용이 보다 저렴하지는 않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이라크전의 예는 그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몇몇 전문가들은 정부가 보다 합리적이고 전문화된 고객이 될 것을 요구한다. 즉 군대는 적어도 민간군사기업과의 아웃소싱에 있어서는 그 스스로가 기업가가 되고 전문가가 되어 자신과 공공의 이익을 적대적으로 방

어하고 공격적으로 경영의 합리성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단지 이론적 요구 사항일 뿐, 현실적으로 개개 아웃소싱의 현 세계에서 모든 정부나 군대 같은 고객이 그런 합리성과 전문성을 갖기는 실로 쉽지 않은 일이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요구되는 것이 아웃소싱의 표준 지침의 제시 외에 정부나 군대의 민간군사기업에 대한 감독능력(Oversight Capacity)을 갖출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결국 정부의 감독 능력의 향상이란 아웃소싱 표준지침의 제시와 동전의 서로 다른 면이라 하겠다[6].

더불어, 민간군사기업 관련 그 법적책임(Legal Accountability)의 문제가 강구되어야 한다. 이는 민간군사기업과 그 구성원들을 감독하고 통제하기 위함에도 필요하지만, 그와 관련된 공권력이나 군대의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정규 군대의 군인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는 민간군사기업이나 그 구성원들이 정규 군인보다 책임이 더 적다는 것은 심히 불합리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민간군사기업이 불러일으키는 다양한 문제들을 통제하고 규제함에 있어서 기존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던 영역과 법률회피의 영역을 규율하는 법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 경우 그 법규는 PMC의 운영 주체, 활동 영역, 그리고 위법한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할 기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이 규율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그러한 민간군사기업에 대한 공적 규제에 대해서는, 민간군사기업은 자유시장의 영역의 문제이고, 따라서 민간군사기업의 제반 문제는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맡겨서 민간군사기업 스스로 자율 규제하도록 맡겨놓는 것이 좋다는 반대 의견도 적지 않을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그러나 오늘날 민간군사기업을 포함한 어떠한 개인이나 기업도 법적 규제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에, 민간군사기업에 대해 공적 규제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결코 설득력이 있을 수 없으며, 예를 들어 2007년에 이라크에서 발생한 ‘블랙워터 사건’만 보더라도 민간군사기업에 대한 공적 규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극명하게 말

해준다(김희동, 2009: 1). 그러므로 민간군사기업의 국내 도입에 대한 모든 논의는 결국은 민간군사기업에 대한 공적 규제를 어느 정도 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문제로 귀착한다 하겠다[6].

4.1.2.2 기업의 규제를 통한 기업윤리의 확보

민간군사기업의 오용과 남용에 대한 대책 중 가장 시급한 것은 민간군사기업 조달 과정과 회계에 대한 투명성의 보장(Transparency on the Accounting-Side) 문제이다. 그동안 민간군사기업 문제는 전통적인 군사 기밀의 영역의 하나로 보아 그 조달이나 계약의 과정과 결과는 상대적으로 비밀화 암호화되었던 측면이 크다. 그런 이유로 심지어 미연방국방부(Pentagon) 역시 민간군사기업의 정확한 실태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민간군사기업을 둘러싼 과정과 절차를 투명하게 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 무엇보다 먼저 요구되는 시점이라 하겠다. 따라서 민간군사기업에 관련된 정확한 정보와 회계 그리고 그 업무 감사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정부는 이른바 국민의 알권리(FOI, Freedom of Information)의 차원에서 민간군사기업에게 그 활동에 관한 모든 업무 및 회계 자료를 비치하고 공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야 한다. 정보 공개는 그들 민간군사기업을 감독하고 통제하기 위한 출발점이기 때문이다[6].

민간군사기업과 관련하여 군대는 이들 민간군사기업들의 역할과 기능 중에서 어떤 것이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을 것이 요구된다. 당시 이라크 전에는 수많은 민간군사기업과 요원들이 참전하고 있었음에도 당시 참전 중이었던 군인 중에는 예를 들어 4성 장군까지도 민간군사기업의 정확한 규모와 역할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민간군사기업의 현주소를 너무도 극명하게 보여준다. 그러므로 민간군사기업이 향후 그 원래 취지대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아웃소싱과 민영화

등에 대한 표준 지침 내지 표준(Standards on Outsourcing and Privatization) 가이드라인이 설정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4.2 민간군사기업의 국내 도입의 법적 문제점

이상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오늘날 현대 글로벌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미 글로벌시장에서 일반화되고 그 효율성이 증명된 민간군사기업을 도입하자는 것 자체는 군사공급기업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다만, 그 역기능을 어떻게 지양할 것인가가 문제인 것이다. ‘Doing More with Less under Morality’ 즉 ‘윤리성에 기초한 저비용고효율’을 그 생명으로 하는 민간군사기업이 자칫 ‘Doing Less with More under Immorality’ 즉 비윤리성에 기초한 고비용저효율’로 전락할 위험성을 어떻게 막아내야 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인 것이다.

민간군사기업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민간군사기업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는냐는 자명하다. 민간군사기업을 법적 규제의 틀 속에 가둬두고 그 활동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결국 멀리는 국제법의 테두리에, 그리고 가까이는 국내법의 테두리 내로 민간군사기업의 설립과 활동을 통제하고 감독하자는 것이다. 군대가 인마살상을 주 업무로 하면서도 명예와 존재감이 주어지는 것은 그것이 도덕의 최소한을 대표하는 국가의 통제 하에 있기 때문이다. 그 윤리성을 제외하면 징병제이든 모병제이든 모든 군인이나 군대는 본질로 들어가서는 돈을 받고 싸우는 용병과 다름 없다.

4.3 민간군사기업의 법제화 모델

민간군사기업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결국 민간인에게 무기 소지 및 사용을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로 흐른다. 그런데 현행법상 민간인의 무기 소지 및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민간군사기업의 국내법적 허용 문제는 결국 무기 소지 및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그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이 정당방위의 범리와 특별법의 제정이라는 두 가지 방법에서 찾을 수 있다.

4.3.1 정당방위의 범리

형법 제21조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여 정당방위의 요건으로서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것, ②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 ③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그러한 요건이 충족된 경우 당해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는다. 정당방위는 그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 국가 기관이 아닌 사인도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허용 근거인데, 그 실력 행사에는 무기 사용도 포함되며 그 무기에 총포도 포함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민간군사기업도 정당방위의 요건을 구비하는 한 총포를 포함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바로 여기에서 민간군사기업이 별다른 실정법적 근거 없이 무기를 사용하여 자기나 제3자를 보호하는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당방위의 범리는 개인이든 기업이든 민간인이 무기 사용의 법적 근거로서 주장할 수 있는 일반적 범리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당방위의 범리로써 민간군사기업가 특히 총포의 소지와 사용의 법적 근거로 하기에는 매우 어렵다 하겠다.

4.3.2 일본의 「해적행위의 처벌 및 해적행위에 대한 대처에 관한 법률」

2009년 일본은 해적 퇴치와 관련하여 「海賊行為の處罰及び海賊行為への對處に關する法律(해적행위처벌및해적행위에 대한대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는데, 이를 줄여 「해적대처법(海賊對處法)」이라 한다. 일본이 해적대처법을 만든 취지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이다 (곽선조, 2015: 130) [13].

첫째, 일본의 해적대처법은 일본 자위대가 해상

특히 공해 상에서 타국 선박에 위해를 가하는 타국 국적의 해적들에게 무기 사용을 포함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두기 위하여 만들어진 일종의 일본 형법에 대한 특별법이다. 즉 한 국가의 형법의 효력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공해상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해적의 경우 속지주의나 속인주의에 근거할 때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 일본의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법적 근거의 제시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그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11].

둘째, 일본의 「해적대처법」은 오히려 일본의 사실상 군대인 자위대가 해외 파병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즉,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이자 패전국으로서 전후 현행 일본헌법인 「일본국헌법(日本國憲法)」을 제정할 때 군대의 보유와 전쟁의 금지를 규정한 제9조를 두고 있는데, 당해 규정 때문에 일본은 군대를 보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쟁 수행 자체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일본의 자위대(自衛隊)는 사실상 군대임에도 군대라는 표현을 쓰지 못하고 있으며, 적어도 법적으로는 경찰력의 일종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그 활동 영역 또한 자위 즉 정당방위의 영역에 그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만약 자위대가 해외 파병이나 무기를 통한 적극적 전투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가 되는 특별법을 그때그때 만들어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해적행위 예방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인 것이다.

일본의 해적대처법은 현재 우리나라가 제정하려 하는 해적법과 그 취지 및 내용이 대동소이하나, 그 법적 의미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다른 측면이 있다. 즉, 위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일본의 해적대처법은 단지 해적이나 민간인의 무기 사용을 허용하는 특별법이라는 의미 외에 자위대의 해외 파병의 근거를 제시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에서 일본의 해적법과 우리의 해적법을 같은 취지로 보아 우리도 일본과 같이 공해상의 해적에 대처함에

있어서 전시에는 군대를 보내고 평시에는 해양경찰을 보내자고 하는 견해는[12], 적어도 일본의 예에서 그 설득력의 근거를 찾으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찬성하기 힘들다.

4.3.3 한국의 「해적행위 예방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

우리나라도 2011년 이전까지 아덴만 해역 특히 소말리아에서 많은 해적 피해를 당하였으며, 특히 2011년의 아덴만 작전은 이제까지 등한시 하였던 해적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처와 그 실정법적 근거를 찾게 하기에 이르렀다[12]. 그 결과 2014년에 이른바 「해적법」이라 불리는 「해적행위 예방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이 당시 해양경찰청의 제안(정부안)으로 제출되어 현재(2015. 08.)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당해 법률안의 주요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3.3.1 군사공급기업(MPF)의 허용

현재 국회에 제출 중인 해적대처법은 민간군사기업과 관련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춰 정부의 허가를 받은 해상보안업체는 무장해상보안요원을 두어 선박에 승선하여 방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즉 당해 법률안에 의하면 해상보안업체는 해상보안요원을 무장하여 함선에 승선시킬 수 있고, 해상보안요원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소지하고 무장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곧 국내에서 민간군사기업 특히 직접 전투력을 행사하는 군사공급기업(MPF)을 사상 처음으로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하겠다.

4.3.3.2 편의치적의 문제점

「해적행위 예방 및 대처에 관한 법률안」은 이미 관련 부분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그 적용 범위를 ‘대한민국국적’을 가진 선박 등으로 한정하여 대한민국국민이 편의치적을 위해 소유 선박을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갖게 하였을 때 그에 보호수단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한계를 갖는

다. 그 결과 정작 그 보호가 필요한 공해상을 운항하는, 우리 국민이 소유하는 외국 국적의 선박들에게는 유용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소말리아 해적 사건과 관련하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해적행위 예방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을 보면, 그 적용 범위를 ‘대한민국국적’을 가진 선박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데(제4조 제1항), 정작 사건의 출발점인 삼호해운(주) 소속 ‘삼호주얼리’호는 몰타(Malta) 국적을 가진 외국선박이어서 그 보호의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곽선조, 2015: 137).

4.3.3.3 육상 테러에 대한 한계

「해적행위 예방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은 그 적용 범위를 해상의 테러에 한정함으로써 육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테러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 고전적으로 테러는 주로 한 국가의 공권력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해상에서 이루어졌으나, 오늘날 냉전 종식 이후의 전쟁 양상의 변화는 보다 많은 전투적 테러행위가 대부분 육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더군다나 과학의 발달은 이제 더 이상 공해상에서의 해적행위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따라서 비록 그 입법 취지는 다르다 할지라도 해적대처법이 육상의 적대행위를 그 적용의 대상에서 전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것은 많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다만, 해적대처법이 해상에서와 마찬가지로 육상에서도 같은 취지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동일 취지의 특별법을 만들 필요가 있음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그 의의가 적지 않다 하겠다.

4.3.3.3 향후 방향성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해적행위 예방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은 ‘해적’행위에 대해서만 군사공급기업(MPF)이 허용된다는 한계를 갖는다. 오늘날 민간군사기업 특히 군사공급기업이 필요한 것은 해적행위라기보다는 오히려 육상에서

일상화된 각종 테러라고 보아야 하는데, 「해적행위 예방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은 그에 상응하지 못하고 있다. 해적행위는 국제법의 일반 원칙에 의하여 모든 국가가 별다른 법적 근거가 없이도 군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공의 적대행위이기 때문에 수많은 국가가 군대를 파견하여 통제하고 있는 실정이며, 따라서 해적행위가 앞으로 창궐할 여지는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육상에서의 테러는 그 원인과 현상과 해법이 너무도 다양하고 난해하여 국제적 공조로도 그 예방이나 대안을 찾기 쉽지 않다. 결국 테러에 대한 대책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가변성과 효율성으로 무장한 군사공급기업(MPF)이 합법적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군사공급기업을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 것인가가 앞으로 민간군사기업의 세계에서 한국이 풀어야 할 과제로 남는다 하겠다.

더불어 「해적행위 예방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은 우리나라 국적을 갖는 선박 등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하여 그 실질적인 보호 범위는 별로 크지 않는다는 비판에 대해 속수무책이다. 다만,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 중인 「해적행위 예방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되어 발효하는 경우 무기를 소지한 민간군사기업 소속 전투요원이 공식적으로 전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된다. 그럼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이른바 군사공급기업(MPF)이 합법적으로 출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해적행위 예방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은 제정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5. 결론 및 제언

기업의 형태로서 군사업무를 담당하는 민간군사기업은 20세기 냉전의 종식과 그에 따른 국제적 양극 질서의 붕괴 그리고 군산복합체로 특징되는 후기 국가자본주의의 산물로서 그 운용 실태에 따라 21세기 현대 사회의 긍정적 현상일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현대 사회에서 결코 탄생해서는 안 될 괴물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그 민간군사기업이 갖는 현대적 의미를 이 시점에서 되새겨 보고 그 향후 나아갈 길을 제시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와 관련하여 이 연구는 제반 문헌분석을 통하여 민간군사기업의 국내 도입 타당성과 법제화 방안에 관하여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5.1 결론

첫째, 민간군사기업(PMC)은 일반적으로 군사지원기업(MSF)과 군사자문기업(MCF) 그리고 군사공급기업(MPF)으로 구분되는데, 그중 군사지원기업과 군사자문기업은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 일반적인 기업법에 근거하여 설립하게 하여도 무방하다. 그 자체로는 무장하여 전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사공급기업(MPF)은 총포로 무장하여 전투를 직접 수행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도입에는 반드시 법적 근거를 특별히 제시하여야 한다.

둘째, 민간군사기업을 가장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국가인 미국과는 달리 민간인이 원칙적으로 무기를 소지할 수 없는 한국에서는 무기를 소지하고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민간군사기업 즉 군사공급기업(MPF)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를 허용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곧,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에서 군사공급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하는 장애가 있으므로, 군사공급기업은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고, 예컨대 영국의 Sandline International의 경우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오히려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셋째, 우리의 경우 민간군사기업은 군사공급기업을 포함하여 국민의 자기보호의 필요성, 제대군인의 재사회화 증대 그리고 국가경쟁력의 제고의 측면에서 국내 도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매우 크다.

넷째, 민간군사기업 특히 군사공급기업을 국내 도입하기 위해서는 그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 경우 국제법적·국내법적 한계를 지켜야 함은 물론이다. 즉, 국제법적으로는 용병을

금하는 국제협약을 지켜야 하며, 국내법적으로는 침략적 전쟁을 금하는 헌법 정신과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을 지켜야 한다.

다섯째, 일본은 자위대의 해외 파병 및 군사공급기업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해적행위의 처벌및해적행위에대한대처에관한법률」을 제정하였으며, 우리나라도 이미 2014년에 관련 법률안으로서 「해적행위 예방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여 현재 국회가 심의 중이다. 그러나 이 법률안은 편의치적의 원리를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5.2 제언

첫째, 민간군사기업 중 직접 전투를 수행하는 군사공급기업을 법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현대적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테러집단에 대해 국민이 자신을 보호하거나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기 사용을 반드시 허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간군사기업이 무기를 사용할 것인가는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라기보다는 테러분자들이 선택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만의 문화나 정책만을 가지고 논의할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점점 그 범위와 정도가 깊어지고 있는 육상 테러에 대한 대책으로 민간군사기업의 활동영역을 해상 테러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육상 테러에까지 확대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경비업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하여 각 사안별 무기 사용의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셋째, 육상 테러에까지 민간군사기업 특히 군사공급기업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기 어렵다면 일차적으로 군의 통제에 따라 군의 작전을 보조하는 민간군사기업의 도입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민간군사기업 요원들은 민간군사기업에서 훈련받고 공급되었을 뿐, 그 본질은 일종의 모병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법적 근거는 병역법에 두는 것이 타당하겠다.

넷째, 현재 제출된 「해적행위 예방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에 있는 ‘국적’보호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에 대해서는 그러한 ‘국적’

을 두고 있지 않은 일본의 「해적행위처벌및해적행위대처에관한법률」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간군사기업을 도입함에 있어서 가장 강조되어야 할 점은 민간군사기업의 궁극적 도입 목적은 국민의 안전 보호에 있다는 것과 그 과정에서 민간군사기업의 최소한의 윤리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군사기업은 그 출발점은 어디까지나 ‘기업’의 하나이긴 하지만, 그 도달점은 ‘군사’업무라는 특성을 가지므로 다른 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윤리성이 요구되며, 그 윤리성에의 요구를 어디까지 수용할 것인가가 민간군사기업을 논하는 유일한 귀착점인 것이다.

참고문헌

[1] Singer, Peter Warren(2004). The Private Military Industry and Iraq: what have we learned to where to next?: Geneva Center for the Democratic Control of Armed Forces (DCAF)/POLICY PAPER.

[2] 켈 실버스타인/정인환 옮김(2007). 『전쟁을 팝니다』. 서울 : 이후.

[3] 김희동, “국제법상 민간군사기업의 법적지위에 대한 고찰”, 서울국제법연구 16(1): 67-102.

[4] 로버트 영 펠튼(Rodert Young Pelton)/윤길순 역(2009). 『용병- 전쟁 산업을 실행하는 그림자 전사들』. 서울 : 교양인.

[5] Scahill, Jeremy(2008). Blackwater: The Rise of the Most Powerful Mercenary Army. New York: Nation Books.

[6] Singer, Peter Warren(2004). The Private Military Industry and Iraq: what have we learned to where to next?: Geneva Center for the Democratic Control of Armed Forces (DCAF)/POLICY PAPER.

[7] 최응렬 · 송혜진 · 오세연(2010). 민간군사기업의 도입 방향에 관한 연구.

[8] 이장욱(2011). 『전쟁을 팝니다』. 서강대학교

출판부.

[9] 김두현(2004). 민간군사기업체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연구: 7-28.

[10] 국방부(2003). 『취업지원추진계획』. 국방부

[11] 甲斐 克則(2013). 海賊對處法の意義と課題, 『海上交通犯罪の研究 [海事刑法研究 第1卷]』(成文堂); www.ymf.or.jp. 검색일 2015. 09. 05.

[12] 형사정책연구원(2012). 『“해적행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13] 광선조(2015). 민간군사기업의 실태분석을 통한 국내 도입 타당성과 법제화 모색.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저자소개]



광 선 조 (SunJo Kwak)
 2005년 법학사
 2012년 경호안전학석사
 2016년 경호보안학박사
 현 재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부
 외래교수
 (주)팍스만코리아 대표이사
 (주)알라미코리아122 이사
 email : sunjokwak@naver.com